



의안번호	제141호
------	-------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</b></p>
---

제 출 자	행정복지국장
제출연월일	2022. 10. 6.

예산실장 심사필
----------

#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141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0. 6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 살기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- 나.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,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, 지도 감독 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
- 다.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유시설 사용, 포상, 준용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사항
  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.
  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  - 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9. 7. ~ 2022. 9. 27.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(041-635-3474)

## 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바르게 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의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·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(읍·면·동 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2. “바르게살기회원”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바르게살기사업”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)**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
2.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
3.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

4. 중앙 및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사 참여 경비
5.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사업 경비
6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르게살기사업 경비

**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**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도감독)**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,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 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공유시설의 사용)**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.

**제7조(포상)**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논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8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자 치 행 정 과 장	조 진 원
	새 마을 자 치 팀 장	황 준 용
	담 당 자	김 상 은 (746-5243)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○ 제3조(지원)

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2. 비용추계결과**

**가. 추계의 전제**

○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

**나. 추계결과**

○ 세출 비용 : 73,000천원

구 분	산출기초	금액(천원)
계		73,000
민간단체법정운영비	- 상근자 급여(1명) 1,961천원 × 12개월 = 23,537,160원 - 읍면동(14), 여성회(1), 청년회(1) 운영비 800천원 × 16개소 = 12,800,000원 - 전화제세공과금,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2,662,840원	39,000
민간경상보조사업	- 청소년 안전문화정착캠페인 : 2,000천원 - 행복한 가정가꾸기부부교실 : 4,500천원 -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: 4,500천원 - 시민 공원 안전지킴이 : 3,000천원 - 충청남도 및 전국회원대회 : 6,000천원 - 불우이웃 김장담가주기 : 5,000천원	25,000
민간행사보조사업	- 바르게살기논산시협의회 전진대회 : 9,000천원	9,000

**3. 작성자**

자치행정과장 조진원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입		76,000	73,000	73,000	73,000	73,000	368,000
시 비		76,000	73,000	73,000	73,000	73,000	368,000
세 출		76,000	73,000	73,000	73,000	73,000	368,000
민간단체법정보조		39,000	39,000	39,000	39,000	39,000	195,000
민간경상보조	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민간행사보조		9,000	9,000	9,000	9,000	9,000	45,000
민간자본보조		3,000	-	-	-	-	3,000
재원 조달		76,000	73,000	73,000	73,000	73,000	368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76,000	73,000	73,000	73,000	73,000	368,000
	지방세	76,000	73,000	73,000	73,000	73,000	368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 민자 등)							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# □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
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(出捐金)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국유시설·공유시설의 사용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·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